



# 현장정리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 에 부딪힘



## 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부딪힘	사망 1명	만59세	



'22. 5. 20.(화) 16:30경 강원 고성소재 ○○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굴착기 뒷편에서 빗자루를 이용하여 현장정리 중 후진하는 굴착기의 우측 뒷바퀴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

## 작업상황 - 비정상적 작업 수행

정상	비정상
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장비유도 및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	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진행 및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→ 굴착기의 운전석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됨



< 운전석의 후방카메라 미작동 >

## 발생원인

- ▶ **직접원인** (접촉 방지조치 미실시) 굴착기 주변에 근로자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
- ▶ **기여요인** (작업계획서 미이행) 작업계획서에는 굴착기 주변에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작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음
- (장비 관리상태 미흡)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보조장치인 후방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됨

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▶ **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접촉 방지조치 철저**
  -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장비 주변 등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장비와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장비를 유도하여야 함
- ▶ **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의 수립·이행 철저**
  -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접근통제, 유도자 배치 등의 예방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
- ▶ **후방카메라 등 운전보조장치 및 경보장치에 대한 관리·정비 철저**
  -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후방카메라, 후방센서 및 경보장치(경광등, 경보음)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정비를 철저히하여야 함

\*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